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95 호
------	---------

2017년 3월 28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3월 15일

나. 제출자 : 김종필 의원 외 9인

다. 회부일자 : 2017년 3월 22일

라.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년 3월 2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김종필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공영주기장 설치 및 직접운영 또는 건설기계사업 단체자 등에 임대·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 공영주기장의 위치, 재정소요,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하고 홈페이지·관보에 공고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 본 조례안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업 등록시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이나 인근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워진 불법 주기로 인해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응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피해는 도민들이 겪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8월 11일 「건설기계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도내에는 아직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한곳도 없는 실정임.
- 건설기계를 도로에 불법으로 주기하여 도민들에게 교통소통 방해, 안전 위협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329건, 2015년 328건, 2016년 394건임.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타시·도 비교

구 분	우리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타시·도
조례명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건 설기계 공영주기 장 설치 및 운 영조례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없음
제정일	2017. 4월예정	2017. 2. 10.	2016. 7. 19.	2016. 10. 13.	
설치주체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시장 또는 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사군구 설치시 비용지원 여부	예산범위 내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 불법주기 과태료 등 처분현황

시·도명	년도별	불법주기 단속건수	처벌 내역		
			과태료 부과건수	행정지도 건수	형사처벌
충청남도	합 계	1,051	284	767	0
	2014년	329	93	236	0
	2015년	328	83	245	0
	2016년	394	108	286	0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